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22일 대심판정에서 2023. 5. 30. 접수된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 5. 24. 개최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되자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위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 및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개최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 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3. 8. 2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환경노동위원회는 ‘환노위’, 그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3. 2. 21.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고, 이 사건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23. 3. 27.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을 심사한 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 4. 26. 제40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법사위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던 2023. 5. 24.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이 사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였다.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자,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은 같은 날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5. 30.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2023. 5. 24.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후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장차 개의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할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함과 동시에(2023헌라3), ㉔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㉕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3헌사584).

- 한편,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인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8.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관련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2021. 9. 14. 법률 제184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

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모든 법률안이 아니라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이유 없이’ 여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목적과 기능,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입법취지, 체계·자구 심사제도가 헌법과 국회법을 비롯한 전체 국가법질서에서 가지는 취지, 그 동안의 국회 입법과정의 관행, 다른 법률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 경위와 관행, 당해 법률안의 내용과 중요성, 당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및 그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법사위는 2023. 3. 27.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 2023. 4. 26. 제40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법사위 위원장은 간사들끼리 협의하여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법사위는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 이처럼 법사위는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는 중이었고, 이러한 심사지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역시 국회법 및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주장 요지

-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행위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의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인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본회의 부의 요구제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됨으로써 소관 위원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법사위 회부 이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사위가 심사를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①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②의 ‘이유 없이’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의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국회법은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소관 위원회에서의 표결’ 절차를 마련하면서,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이라는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이전에 단 두 번의 심사만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 역시 체계·자구 심사와는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표결절차’가 취지에 맞게 작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주장 요지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상 절차 요건을 갖추어

부의 요구를 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관한 표결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회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법 제86조 제4항을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쟁점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1. 국회의원 정점식
2. 국회의원 박형수
3. 국회의원 유상범
4. 국회의원 장동혁
5. 국회의원 전주혜
6. 국회의원 조수진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 피청구인: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김진한, 황예영)]
2.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유선영, 강윤희, 이수지)]